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수신 대한약사회장
(경유)
제목 질의 회신

1. 관련: 대약 제2021-737호('21.7.14.)
2. 위 문서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.

- 다 음 -

○ 질의 사항

- 가. 바로필 운영업체가 온라인 앱을 통해 일반소비자로부터 일반의약품(해열진통제·감기약 등) 구매신청을 받은 뒤 약국개설자에 전달하고,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구매신청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(2020-889호, 2020.12.17)에 해당하는지 여부
- 나. 약국개설자가 바로필 앱을 통해 접수된 일반의약품 구매신청을 근거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바로필 회원 가입자(일반소비자)에게 일반의약품이 배달되도록 하는 행위가 약사법(제50조 제1항)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

○ 답변 사항

- 가. 우리 부는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」 안내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889호, 2020년 12월 16일)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"심각"인 경우에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전화상담·처방 후 팩스·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이를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(유선 및 서면) 후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.
 - 따라서 위 공고에 따른 의약품 전달방식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에 한정된 것이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위 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나. 현행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,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품이므로,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·한약사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.
-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주무관 **문화목** 행정사무관 **여정현** 약무정책과장 **하태길** 전결 2021.7.15.
협조자
시행 약무정책과-2995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번호 044-202-2491 팩스번호 044-202-3927 / mhm8600@korea.kr / 비공개(5,7)